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

제 1 조(목적)

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 조 및 제 88 조, 동법 시행령 제 64 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,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위원회 권한과 직무)

- 1.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2.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3.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
- 4.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
제 3 조(위원회 구성)

- 1.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0 인 이상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3.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실무팀장이 담당한다.

제 4 조(후보자 공모)

- 1.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 개월 전에 시행한다.
- 2.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고지하고 필요할 경우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.
- 3.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(지원서, 추천단체 추천서), 접수방법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위원 결격사유,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 5 조(후보자 추천)

- 1.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0 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.
- 2.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0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.
- 3.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조(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)

- 1.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.
- 2.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.
 -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
 - ② 국가 공무원법 제 2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공무원, 법관 제외)
 -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
 -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 - ⑤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
 - 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24조(시청자위원 추천단체)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
제 7 조(후보자 선정)

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, 연령,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대표성,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)

- 1.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.
- 2. 위원은 주관부서와 편성부서(편성위원회)와 협의 후 최종 선정하고, 방송사업자가 위촉한다.
- 3.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위원은 영업본부장, 지원본부장, 준법지원부문장, 전략기획부문장, 경영지원부문장, 커뮤니케이션부문장으로 한다.
- 4.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- 5.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(단,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.)

제 9 조(위원의 위촉 및 해촉)

- 1. 대표이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한다.
- 2. 대표이사는 위원이 임기 중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,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제 10 조(임기)

- 1.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(단,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)
- 2.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3. 위원은 임기 중 제 6 조 2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사임한다.

제 11 조(위원장의 직무 등)

-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 12 조(위원회 운영)

- 1.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 -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②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- ③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
- 2.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제공해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회의 소집 최소 3일 전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.
- 3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4.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5.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.
- 6.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,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.
- 7.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,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(단,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)
- 8.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9.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 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 13 조(수당 등)

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조(기타)

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, 본 권고의 내용에 준하여 내규를 제정하고,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 내규 제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 수 제한, 위원 임기, 연임 제한 등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 또는 전문편성 채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(개정안)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